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959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하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 담당변호사 윤봉규

변론 종결2021. 9. 8.

판결 선고2021. 10. 13.

주 문

1. 파주시 D 임야 1,576m²에 관하여,

가. 1) 피고 A과 주식회사 E 사이에 2019. 7.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A은 주식회사 E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7. 15. 접수 제496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20. 3.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E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3. 27. 접수 제255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1) 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20. 3.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3. 27. 접수

제255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은 2016. 4. 15. 원고와 보증금액 3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17. 4. 14.(그 후 2021. 4. 9.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당시 E의 실경영자인 G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E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은 E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제2호)에 원고의 사전 통지나 독촉 없이 E등은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나. E가 그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18. 6. 4.부터 2019. 7. 1.까지 합계 1,19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파주시 D 임야 1,57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피고 A의 근저당권'이라는 방식으로 칭한다).

피고 A	2019. 7. 15.	2019. 7. 15.	1억 원
피고 주식회사 B1)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2020. 3. 26.	2020. 3. 27.	1억 원
피고 주식회사 C2)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2020. 3. 26.	2020. 3. 27.	2억 원

라. 근로복지공단은 2019. 8. 12. 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E는 2020. 2. 14. H공제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연체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채무들을 연체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20. 6. 11. E에 대한 사전구상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5. 그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0. 9. 11. F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E의 대출원금과 이자 합계 348,114,10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E로부터 그중 일부(2,738,630원)를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소기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있을 무렵인 2019.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과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 C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E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에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1년 전부터 E가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E를 대신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E를 상대로 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피고 A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자신이 2016. 8. 1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I은 E에 1억 원(이자 연 24%)을 대여하였는데, 그 투자금 반환에 갈음하여 I으로부터 E에 대한 이자채권을 사실상 양도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과 I, E 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그 합의에 따라 피고 A이 E로부터 실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금에 상당하는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E의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A은 I의 주주로서 E와 금전 거래 관계에 있던 I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또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E로부터 2018. 3. 16.자 매매계약의 계약금반환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지연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당시는 E의 채무 연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때라고 보이므로, 피고 C은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들과 E 간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박광민

- 1)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2) 이하 '피고 C'이라 한다.